

서울고등법원 2021. 8. 26 선고 2020나203006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기술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Q

변론 종 결 2021. 7. 8.

판 결 선 고 2021. 8. 26.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가합572567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의 소송수계 및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와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2021. 8.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에게 [별지 1] 내지 [별지 5] 기재 각 상표권에 관하여 특허청 2019. 7. 12. 접수 E로 마친 각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원인의 부인등록절차를 이행하라.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D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C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2021.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별지 1] 내지 [별지 5] 기재 각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허청 2019. 7. 12. 접수 E로 마친 각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원인의 부인등록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D는 원고에게 [별지 6]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B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제1심 원고 기술보증기금의 피고들에 대한 소송을 수계하고,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위 ‘가, 나항’과 같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 정한 부인의 소로 교환적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위 다항’의 부인의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위 ‘다항’ 청구에 대해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명의개서청구를 위 부인의 청구와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2행의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원 교부행위’라고 한다).” 부분을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제1 처분행위’라 한다).”라고 고쳐 쓰고, ②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3~9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판결 이유의 위 인정사실 부분 중에서 ‘원고’ 부분은 ‘기술보증기금’으로, ‘피고 A’ 부분은 ‘제1심 공동 피고 A’으로, ‘피고 B’ 부분은 ‘제1심 공동 피고 B’으로 각 고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 제1심 공동 피고 B은 이 사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9. 3. 4.자로 피고 D에게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상표권양도계약을 작성하였고, 특허청 2019. 7. 12. 접수 접수번호 E로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하여 피고 D 명의의 이전등록절차가 마쳐졌다(이하 ‘제2 처분행위’라 한다).

사. 제1심 공동 피고 B의 재산 현황

제1, 2 처분행위 당시 위 B이 가지고 있는 소극재산은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 1,342,575,393원, N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25,766,000원, O에 대한 대출금채무 4,438,000원, P에 대한 보증채무 50,000,000원, 합계 1,422,779,393원 정도였고, 위 B의 적극재산은 특별히 존재하지 않았다.

아. 제1심 공동 피고 B의 파산과 소송수계

1) 제1심 공동 피고 B은 2020. 10. 12. 서울회생법원 2020하단309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고,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부인의 소로 청구를 변경하는 등으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청구를 변경추가하였는데, 제1, 2 처분행위 등을 부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원고의 2021. 1.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이 2021. 1. 13.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 1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 2 처분행위에 관한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파산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되나, 한편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편파행위를 고의부인의 대상으로 할 경우,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 혹은 담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더 나아가 파산채권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 내지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257572 판결 등 참조).

2)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위 2014다214885 판결 등 참조).

3) 한편, 파산절차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에게 유해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어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채권자 평등, 채무자의 보호와 파산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법의 지도이념이나 정의관념에 비추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가 정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그 행위의 상당성 여부는 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의도와 동기 등 채무자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 있어서는 변제자금의 원천,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관계, 채권자가 채무자와 통모하거나 동인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부당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대방인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위 2014다214885 판결 등 참조).

나. 제1, 2 처분행위가 부인 대상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제1, 2 처분행위 당시에 이미 기술보증기금의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이 성립되어 있었고, 제1심 공동 피고 A(이하 'A'이라 한다)의 자금 사정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기술보증기금의 제1심 공동 피고 B(이하 'B'이라 한다) 내지 A에 대한 사전구상금 또는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제1, 2 처분행위일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2019. 7. 31.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1개월여 만에 기술보증기금이 J은행 등에게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위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기술보증기금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 점, ② A은 2019. 7. 10.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7. 26.자로 A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였던 점, ③ A의 대표이사인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제1, 2 처분행위 당시 주채무자인 A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는 등으로 인하여 곧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B도 2020. 9. 2. 파산절차 신청을 하여 2020. 10. 12. 파산선고를 받았던 점(서울회생법원 2020하단3094호)을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1, 2 처분행위를 하여 그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기술보증기금을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을 감소시켰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채권자인 기술보증기금 등을 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채무자인 B은 제1, 2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권자인 기술보증기금을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C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 C의 주장 요지

피고 C는 B에게 2015년도에 3,000만 원을, 2019년도에 2,000만 원, 총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B의 제1 처분행위는 위 대여금을 변제한 것인데, 제1 처분행위 당시에 B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 처분행위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권 행사의 주관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등 피고 C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C가 위 주장과 같이 B에게 총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 또한, 설령 피고 C가 그 주장과 같이 B에게 총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피고 C와 B의 관계(피고 C는 B의 처형), 피고 C의 주장과 같은 변제가 이루어진 시기와 그 방법, 제1 처분행위 당시의 B와 A의 재무 상황 등을 위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B로서는 제1 처분행위 당시에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인 피고 C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과 아울러, 피고 C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또한,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제1 처분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여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제1 처분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여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 C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D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 D의 주장 요지

(1) A의 튜살크림제품인 "R"(이하 '쟁점 물품'이라 한다)의 중국 측 거래 상대방은 피고 D를 통한 쟁점

물품의 중국 수입의 거래조건으로, 피고 D가 쟁점 물품의 상표권을 보유하는 것을 요구함에 따라, B로서는 쟁점 물품의 중국 수출을 통한 A의 경영상황 개선과 그 정상화를 위한 경영상 판단에 따라 제2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제2 처분행위는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이하 '①번 주장'이라 한다).

(2) 제2 처분행위 당시에는 B의 연대보증채무가 현실화되기 이전이고, A이 회생개시 신청을 하기 이전인 사정 등 제2 처분행위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주관적 요건이 인정될 수 없다(이하 '②번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①번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B은 제2 처분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D로부터 실질적으로 어떠한 대가를 받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2 처분행위 이후 A의 경영 정상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 등도 발견할 수 없는 점과 함께, 피고 D의 설립 시점, 제2 처분행위 당시 B과 A의 재산 상태 등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등 피고 D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2 처분행위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여 일반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의 감소나 불공평을 감수하여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번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2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와 경위, 제2 처분행위 당시 B 및 A의 재무 상황, 이 사건 상표권의 내용, A의 회생신청 경위 등을 위에서 살핀 여러 사정들과 종합해 볼 때, 피고 D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B로서는 제2 처분행위 당시에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과 아울러, 피고 D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결국,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부인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제1 처분행위에 대하여

앞서 살핀 바에 따르면 제1 처분행위는 편파행위로서 고의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50,000,000원의 지급일인 2019. 7. 12.부터 피고 C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8.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위 2014다214885 판결 등 참조).

2) 제2 처분행위에 대하여

가)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권 행사에 따라 등기의 원인 행위가 부인될 때 또는 등기가 부인된 때 파산관재인 등은 일반의 말소등기와 달리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도록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6조 제1항과 부인의 등기에 관한 직권 말소촉탁 등을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6조 제3항, 제23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회생법 제397조 제1항이 정한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의 행사에 따른 등기의 원상회복으로는 일반의 말소등기에 의하거나 또는 부인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에 의하거나 하는 것은 모두 상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파산채무자가 소유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마친 후에 파산채무자의 해당 행위가 부인된 경우에 그에 관한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파산관재인이 그 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등기원인행위 내지 그 등기 자체의 부인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는 등록된 권리에도 채무자회생법 제26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7조에 의할 때 상표권 등과 같이 등록된 권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것이다.

나) 앞서 살핀 바에 따르면 제2 처분행위도 편파행위로서 고의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D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하여 특허청 2019. 7. 12. 접수 E로 마친 각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원인의 부인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B이 A의 대표이사로 있던 중, B의 조카로서 피고 D의 대표자인 S에게 5,000만 원을 직접 제공하고, B의 자녀인 T를 거쳐 S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제공하여 총 6,000만 원(이하 '쟁점 금원'이라 한다)을 S에게 제공한 행위와 B이 피고 D의 실질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S를 피고 D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하는 명의신탁계약 및 B이 S에게 지급한 쟁점 금원으로 피고 D의 자본금을 출자한 행위는 모두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의 '고의부인' 내지 제391조 제4호의 '무상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인 대상 행위에 해당되어 부인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D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B 앞으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위 '1)항' 청구와 선택적으로, 이 사건 주식은 피고 D의 주주명부에는 그 명의자가 S 앞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B과 S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B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B과 S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D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B 앞으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인데, 을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쟁점 금원의 이체 경위와 쟁점 금원 중 5,000만 원을 제공한 U의 입장 및 위 5,000만 원의 반환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B이 차용 등의 방법으로 쟁점 금원을 조달하여 이를 S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또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B과 S 사이의 명의신탁계약 등을 추단할 만한 쟁점 금원의 사용권한 및 종국적인 귀속을 정한 약정의 내용 등에 관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③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마련한 자금으로 회사의 자본금이 납입되었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기초된 원인관계로는 명의신탁관계 외에 납입된 자본금의 단순한 차용관계 등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갑 제1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B이 쟁점 금원의 소유자로서 이를 S에게 제공하여, 쟁점 금원을 피고 D의 자본금으로 출자하고, B이 피고 D의 실질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S를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 D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하는 명의신탁계약을 S와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소송수계하고 교환적으로 변경 및 추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제2의 라항'의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한편,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 법원에 제출한 2021. 8. 12.자 참고서면과 그에 첨부된 자료 등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재판장 판사 박혜선, 판사 임영우, 판사 채동수

[별지 1]

상 표·등 록 번 호		
[권 리 란]		
표시번호	등 록 사 항	상 표
1번	출원연월일	
	출원번호	
	출원광고연월일	
	광고번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상품구분수	
	상표권 설정등록일	등록
	종속기간(예정)연월일	2027년 03월 06일
	지정상품	제03류 : 마스크팩, 마사지용겔, 왁스지용오일, 헤어비오일, 약용크림, 피부미백크림, 체중감량용화장품, 신스크린크림, 신스크린로션 제05류 : 의약품오일, 의약품연고, 피부보호용화장제
2번	(상표권종속기간경신등록) 신청 연월일 : 2017년 03월 03일 신 청 번 호 : 상품구분수 : 2 지 정 상 품 : 제03류 : 마스크팩, 마사지용겔, 왁스지용오일, 헤어비오일, 약용크림, 피부미백크림, 체중감량용화장품, 신스크린크림, 신스크린로션 제05류 : 의약품오일, 의약품연고, 피부보호용화장제 2017년 03월 03일 등록	

[별지 2]

상 표 등 록 번 호		
[권 리 란]		
표시번호	등 록 사 항	상 표
1번	출원연월일	
	출원번호	
	출원공고연월일	
	공고번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상표류구분수	
	상표권 설정등록일	등록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29년 01월 28일
	지정상품	제03류 : 데스크톱, 랩사지용 겹, 랩사지용 오일, 베이비오일, 약용 크림, 피부미백크림, 체중감량용 화장품, 선크림크림, 선크림
2번	(상표권존속기간결정등록) 신청 연월일 : 2018년 01월 23일 상표류구분수 : 1 지 정 상 품 : 제03류 : 데스크톱, 랩사지용 겹, 랩사지용 오일, 베이비오일, 약용 크림, 피부미백크림, 체중감량용 화장품, 선크림크림, 선크림	신 설 번 호 : 2018년 01월 23일 등록
[상 표 등 록 료 란]		
전액납부 10년분 (2018.01.29 ~ 2028.01.28) 금 액 310,000 원 2018년 01월 24일 납입		

[별지 3]

상 표 등 록 번 호			
[권 리 란]			
표시번호	등 록 사 항	상 표	
1번	출원연월일		
	출원번호		
	출원공고연월일		
	공고번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상용류구분수	2	
	상표권 설정등록일	등록	
존속기간(예정)연월일	2020년 05월 18일		
지정상품	제03류 : 마스크팩, 마사지용 폼, 마사지용 오일, 베이비오일, 피부미백 크림, 치통감완용화장품, 선크림크림, 선크림로션, 약용크림(비의료용) 제05류 : 의약품오일, 의약품연고, 피부보호용약제		

[별지 4]

상 표 등 록 번 호		
[권 리 란]		
표시번호	등 록 사 항	상 표
1번	출원연월일	
	출원번호	
	출원광고연월일	
	광고번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상품구분수	
	상표권의 취지	일반상표
	상표권 설정등록일	2011년 02월 07일 등록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21년 02월 07일
	지정상품	제03류 : 고형화장비누, 연도용 무스, 연도용 비누, 액체비누, 폼비누, 미용비누, 바디 크림비누, 바디케어용 비누, 발 발한용 비누, 발한방지용 비누, 발취비누, 샴푸, 손세정제, 이온드레누, 예 존동물용 샴푸, 액체목욕비누, 액용 비누(비외포름), 유아용 샴푸, 인체용 비누, 액체용 폼비누, 폼이비누, 크림비누, 폼이 용 워시, 핸드물리너[손세정제], 향수비누, 헤어샴스, 화장비 누

[별지 5]

상 표 등 록 번 호			
[권 리 란]			
표시번호	등 록 사 항		상 표
1번	출원연월일		
	출원번호		
	출원광고연월일		
	광고번호		
	등록결정(상결)연월일		
	상표류구분수	1	
	상표권의 위치	일반상표	
	상표권 설정등록일	2011년 02월 07일 등록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21년 02월 07일		
지정상품	제05류 : 비등치료용 조제약품, 알레르기용 약제, 약제용 등산연고, 약제용 목선제, 외피용 약제, 의약품 스킨로션, 제물감염용 약제, 피부결핵치료제, 피부과용 약제, 피부과용 방균제, 피부보호용 약품, 피부장미치료용 약제, 발가락 염증을 치료하는 바디샴푸, 의약품 헤어샴푸, 의약품 바디워시, 의약품 스킨클렌저		

[별지 6]

별지 6

주식의 표시

순번	명 의 자	주식 수	1주당 액면가(원)	주식의 종류	액면가 총액(원)	주식발행회사
1		60,000	1,000	기명식 보통주	60,000,000	주
	합계	60,000			60,000,000	

